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3호 2008년 9월 pp.73~110
한국세무학회

기업지배구조로서 내부감사제도의 실태분석*

-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비교관점 -

김광윤**

<요 약>

이 연구는 법과 제도를 고려한 경영학적 접근(소위 법경영학적 연구)으로서 기업지배구조의 하나인 내부감사제도 즉, 감사와 감사위원회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실태를 설문조사 분석함으로써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강제 이식된 이래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영미식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현상을 진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감사설치회사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간의 차이검증에 의해 과학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실천적 연구를 시도한 특징을 지녔다.

본 조사분석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회원인 주권상장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2007년 4월~6월 중에 감사(감사위원), 감사실 책임자 및 실무자에게 설문조사한 2007년도 감사(감사위원회) 및 감사실 운영현황 통계자료에 근거하되, 조직 형태별 비교분석을 추가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표본기업은 2007년의 경우 총 122개사로 2007년 6월말 현재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전체 주권상장기업 676개사의 18.1%에 해당하였다.

연구결과를 설문조사분석에서 도출된 개선방안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감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게 감사와 감사위원회제도 중 어느 제도가 감사기능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데 대하여 감사제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답변(62%)이 감사위원회제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답변(16.3%)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제도 채택기업 중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서 임의로 선택한 기업의 비율이 최근 수년간 42%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는 점에서 보듯이 감사위원회제도가 감사제도보다 꼭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부감사조직의 기구형태는 규모에 따라 강요할 것이 아니고 기업이 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 선택권을 갖게 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감사 후보의 추천은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아닌 별도의 감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한다. 셋째, 감사(감사위원)의 경력과 보수수준에 관한 규정을 독립성 제고와 기업내 위상 확립차원에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감사업무는 기획, 경리 등의 다른 업무와 배타적으로 전담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감사기능의 활성화는 감사실 등 감사보조기구의 설치 의무화와

* 본 논문은 2007년 12월 개최된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것을 적의 수정한 것이며, 분석에 기초가 된 통계자료를 이용하게 해주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kimkyn@ajou.ac.kr, 011-9279-4883

감사요원에 대한 인사동의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감사대상 항목의 범위를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로 명기하며 감사방법은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 감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감사관련 예산, 교육연수 및 규정 개폐에 대한 권한이 감사(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감사위원)에게 공식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여덟째,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내부감사의 연계관련 이해도가 감사의 연례평가업무 실질화를 통해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 아홉째, 주주대표소송 외에 최근 본격 시행에 들어간 증권집단소송 등 감사 관련 소송대비 태세가 상당액의 임원배상책임보험가입 등으로 실효성 있게 보장되어야 한다.

끝으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인의 협조체제가 발견된 부정이나 위법사항의 보고를 위해 정례화 될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시 협조 등 그 내용의 구체화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기업지배구조, 내부감사, 감사, 감사위원회

I. 서 론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라 함은 조직으로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규율하는 체제를 총칭하는 말이며, 여기에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 이사회, 그리고 내부감사기구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포함된다(정광선 2002). 그 목표는 기업가치의 극대화 또는 주주 부의 극대화를 통해 기업의 실패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성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에는 자금제공자로서 주주 외에 채권자의 보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크게 2대별하여 대리인이론(agency theory)과 계약적 지배이론(contractual governance theory)가 있다(남상구 2006). 전자에 의할 경우 지배구조는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인인 경영진을 통할하는 주주중심 모형을 낳게 되며 미국이나 영국처럼 시장을 통한 외부적 통제(예, M&A, 경영자 노동시장, 공시제도, 외부감사)에 의존하게 된다. 후자에 의하면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 경영자, 종업원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집단들이 명시적·묵시적인 계약에 의해 부여된 각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을 감독하고 각 집단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이해관계자중심 모형을 낳게 되며 독일이나 일본처럼 은행 통제와 내부적 통제(예, 이사회에 의한 경영진 감독, 경영진 보상체계 설계)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최근 들어 자본시장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기업의 자금조달방식도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조달방식 보다는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조달방식이 선호됨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하게 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의 유형도 주주중심 모형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997년 말 도래한 경제위기 직후에 IBRD등의 권고를 받아들여 상법 개정을 통해 1998년의 소수주주권 강화 조치와 함께 1999년 12월에는 기업지배 구조의 개혁을 위해 당시 제대로 기능수행을 못한 이사회와 감사기능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어 2000년 1월 증권거래법 상 특례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중 본고의 연구과제인 감사위원회제

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상법상 모든 회사는 기존의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경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증권거래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이때 감사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며, 감사위원장은 사외이사일 것 등이 요구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7 및 준용된 제54조의6 제2항 내지 제6항).

그러나 경제위기 후 1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분식회계와 부실공시는 계속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2004년에 제정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되게 된 현실에서 감사제도와 관련한 상장회사 감사들의 불평을 듣고 과연 당초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장치로 도입된 영미식 감사위원회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볼 필요를 느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과 제도를 고려한 경영학적 접근(소위 법경영학적 연구)으로서 기업지배구조의 하나인 내부감사제도 즉, 감사와 감사위원회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실태를 문헌조사 이외에 설문조사 분석함으로써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강제 이식된 이래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영미식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현상을 진단한 후 가능한 한 감사설치회사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간의 차이검증에 의해 과학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기업지배구조의 중요부분인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포괄하는 내부감사제도에 대하여 문헌 고찰 및 설문조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순서는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3장에서 현황조사와 문제점 분석을 하며 제4장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한 후 제5장에서 결론을 기술하는 것으로 하였다.

II. 선행연구의 개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법학적 접근과 경영학적 접근으로 2대별할 수 있다.

1. 법학적 접근

감사 관련 지배구조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가 법학자 특히 상법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현대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이원화론(감사제도)과 일원화론(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제도)으로 구별하여 제시한 이철송(2005)을 비롯하여, 강희갑(2002)은 이사회를 포함한 주식회사의 경영감독·감사 및 감

사위원회제도를 연구하였고, 권중호(2004)는 감사와 감사위원회제도를 일본의 병립론을 포함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다.

김상규·윤선희(2000)는 1999년 말의 상법 개정과 2000년 초의 증권거래법 개정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에 관한 문헌 연구를 하였으며, 이준섭(2006)은 내부감사와 내부통제를 구분함과 동시에 최근 감사 관련제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상법상 감사 및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기능의 효율적 정립방안을 연구하였다.

임중호(2007)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기능제고 방안을 비교법적 시각으로 광범위하게 연구하였으며, 정준우 외(2007)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감사제도를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중국, 프랑스 및 EU 등 8개국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2. 경영학적 접근

한편 경영학분야의 감사제도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데 이근수(1992)가 미국의 감사위원회제도 소개와 그 도입가능성을 문헌 연구한 바 있는 정도이다. 나머지는 기업지배구조 전반을 한 패키지로 연구한 것인데 정광선(2002)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중시경영의 실천방안을 기술적 방법으로 소개하였으며, 박경서·이은정(2004)이 기업지배구조와 주가수익률 및 시장의 효율성의 관계를 실증 연구하였다. 그리고 김광윤·김상준(2005)은 기업지배구조가 법인세유연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방법으로 고찰하였고, 남상구(2006)는 글로벌경쟁과 기업지배구조의 관계를 문헌 연구하였다.

외국의 경우 감사위원회에 관한 연구가 많지만 최근 Sarbanes - Oxley Act 이후 논란이 된 내부통제제도와 기업지배구조를 연관시켜 연구한 Krishnan(2005)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동 연구는 내부통제제도의 품질을 기업고유의 특성인 경제적 변수와 통제메커니즘인 기업지배구조변수의 다변량 함수로 생각하고 감사위원회 설치와 이사회 독립성 등 지배구조 메커니즘의 통계적 유의성을 도출하였다.

3. 기존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

본 연구의 특징은 법과 제도를 고려한 경영학적 접근(소위 법경영학적 연구)으로서 기업지배구조의 중요부분인 내부감사제도 즉, 감사와 감사위원회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실태를 설문조사 분석함으로써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9년 강제 이식된 이래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영미식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현상을 진단하되, 가능한 한 감사설치회사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간의 차이검증(X^2 -test 사용)에 의해 과학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실천적 연구를 시도한 점이다.

III. 감사관련 제도의 현황조사와 문제점 분석

1. 조사설문의 구성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문조사한 내용을 관련 <표>와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설문 관련 <표> 번호
1	표본기업의 자산규모	<표 1>
2	감사조직의 기구형태	<표 2> ~ <표 5>
3	감사 및 감사위원의 수와 상근여부	<표 6> ~ <표 7>
4	감사 및 감사위원 후보의 실제 추천자	<표 8> ~ <표 10>
5	감사(위원)의 독립성	<표 11> ~ <표 12>
6	감사(위원)의 경력과 보수수준	<표 13> ~ <표 14>
7	감사업무의 전담여부	<표 15> ~ <표 16>
8	감사기능의 활성화	<표 17> ~ <표 18>
9	감사보조기구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표 19> ~ <표 24>
10	감사항목, 감사범위와 감사방법	<표 25> ~ <표 28>
11	감사관련 예산, 교육연수 및 규정개폐의 권한유무	<표 29> ~ <표 31>
12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내부감사의 관계	<표 32> ~ <표 33>
13	감사와 소송	<표 34> ~ <표 37>
14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협조체제	<표 38> ~ <표 41>

2. 표본기업의 자산규모

본 조사분석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상장협’)가 회원인 주권상장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2007년 4월~6월 중에 감사(감사위원), 감사실 책임자 및 실무자에게 설문조사한 “2007년도 감사(감사위원회) 및 감사실 운영현황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이다.

분석대상기업의 자산규모는 <표1>과 같다. 설문에 응답한 표본기업은 2007년의 경우 총 122개사(6월말 현재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전체 상장기업 676개사의 18.1%)이나 무응답 2개사를 제외할 때 직전연도 말 현재 자산규모가 1,000억 원 미만 기업 30개사(25.0%), 1,000억 원 이상~2조 원 미만 기업 71개사(59.2%), 2조 원 이상 기업 19개사(15.8%) 등으로 구성되었다.¹⁾

1) 이것은 2007년 6월말 현재 모집단 676개사(모든 결산일 포함)의 자산규모별 분포가 1,000억 원 미만 기업

자산규모에 대하여 감사설치회사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간 차이분석을 X^2 -test에 의해 한 결과 감사설치회사는 자산 총액 2조원 미만 회사들이 많은데 비해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이 다수를 차지해 예상대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00$).

이것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이지만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한 기업이 일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별도로 의무설치기업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을 제외하고 감사위원회제도 자율선택기업의 수를 조사해본즉, 2007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전체 모집단 122개사 중 52개사로 42.6%였으며 이것은 전연도 해당기업들의 비율(2005년의 42.7%, 2006년의 41.7%)과 큰 추세변동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표 1〉 자산규모별 감사(감사위원회)설치 현황

(단위 : 개사, %)

자산총액구분	계	감사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차이검정 (X^2)
			구성비		구성비	
① 1,000억 원 미만	30(25.0)	30	33.0			$p=.000$
② 1,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71(59.2)	61	67.0	10	34.5	
③ 2조 원 이상	19(15.8)	—		19	65.5	
합 계	120(100)	91	100	29	100	

(결측치=2)

3. 내부감사조직의 기구형태

표본기업 감사조직의 기구형태는 <표 2>와 같다. 2007년도의 경우 감사 설치회사가 75.4%, 감사위원회 설치회사가 23.8%로 <표 1>의 응답기업 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기업 비율 16.8%보다 좀더 높게 나왔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에 의해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감사위원회 설치의무화에도 불구하고 2조원 미만~1,000억원 이상인 회사의 자율선택 비율은 42% 내외에서 수년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1999년 개정 상법상 영미식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된 후 8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감사 설치회사가 압도적 다수이고 감사위원회 설치회사가 정착되지 못하고 것으로 분석되는바,²⁾ 감사위원회 제도가 우리나라 기업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가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는 전연도

180개사(26.7%), 1,000억 원 이상~2조원 미만 기업 405개사(59.9%), 2조원 이상 기업 91개사(13.4%)인 것과 대비할 때 비슷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인정될 수 있다.

2)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모집단 전체로 볼 때 2007년의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비율은 20.5%(596개사 중 122개사)에 그치고 있다.

인 2006년과 비교해 볼 때 차이검정(X^2 -test)에서 $p=0.871$ 로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서도 같다.

〈표 2〉 감사조직의 기구형태는?

(단위 : 개사, %)

구 분	2007년		2006년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	구성비
① 감사 설치회사	92	75.4	90	76.9
②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29	23.8	27	23.1
무응답	1	0.8	—	—
합 계	122	100	117	100
연도별 차이검정(양측)	$p=.871$			

한편, 현재 감사 설치회사의 감사에게 어느 제도가 감사기능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데 대하여 <표 3>과 같이 감사제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답변(62%)이 감사위원회 제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답변(16.3%) 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나아가 전연도의 감사위원회 제도 지지비율 25.3%와 비교할 때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바람직한 감사조직의 형태는?

(단위 : 개사, %)

구 분	2007년		2006년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	구성비
① 감사제도가 더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57	62.0	57	60.0
② 감사위원회제도가 더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15	16.3	24	25.3
③ 잘 모르겠다	20	21.7	14	14.7
합 계	92	100	95	100

또 감사제도 유지 이유도 <표 4>와 같이 현재의 감사제도만으로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62.0%로 전연도의 45.6% 보다 대폭 증가하였다.

〈표 4〉 감사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위 : 개사, %)

구 분	2007년	구성비	2006년	구성비
	회사수		회사수	
① 현재의 감사제도만으로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57	62.0	41	45.6
② 회사의 규모와 환경이 감사위원회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26	28.2	32	35.6
③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중심이므로 감사기능이 저하될 것 같아서	5	5.4	11	12.2
④ 감사위원회제도는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아서	2	2.2	4	4.4
⑤ 기타	2	2.2	2	2.2
합 계	92	100	90	100

한편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 감사위원회가 기업투명성 제고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것에 대하여 <표 5>와 같이 도움되었다는 비율이 69%로 전년도인 77.8% 보다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위원회제도가 아직은 불만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 5〉 감사위원회가 기업투명성 제고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가?

(단위 : 개사, %)

구 분	2007년	구성비	2006년	구성비
	회사수		회사수	
① 도움이 되었다	20	69.0	21	77.8
② 그저 그런 편이다	8	27.6	5	18.5
③ 도움이 되지 않았다	—	—	—	—
무응답	1	3.4	1	3.7
합 계	29	100	27	100

4. 감사 및 감사위원의 수와 상근여부

감사의 수는 <표 6>과 같이 감사 설치회사에서는 대부분 1~2명의 감사를 두고 있으며 상근자가 없이 비상근감사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18.5%나 되어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상당하며, 그 비율은 2006년의 13.3% 보다 2007년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표 6〉 귀사의 감사 수 및 상근여부 현황은?

(단위 : 개사, %)

구 분	2007년	구성비	2006년	구성비
	회사수		회사수	
① 상근 0명, 비상근 1명	16	17.4	12	13.3
② 상근 0명, 비상근 2명	1	1.1	—	—
③ 상근 1명, 비상근 0명	61	66.3	55	61.2
④ 상근 1명, 비상근 1명	13	14.1	17	18.9
⑤ 상근 1명, 비상근 2명	—	—	1	1.1
⑥ 상근 2명, 비상근 0명	1	1.1	3	3.3
⑦ 상근 2명, 비상근 1명	—	—	1	1.1
무응답	—	—	1	1.1
합 계	92	100	90	100

한편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서는 <표 7>과 같이 감사위원의 수가 2~6명이나 상근감사가 없이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경우가 48.2%(2006년은 51.9%)나 되고 있어 감사직무의 충실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표 7〉 귀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수는?

(단위 : 개사, %)

구 분	2007년	구성비	2006년	구성비
	회사수		회사수	
① 상근 0명, 사외이사인 2명	1	3.4	—	—
② 상근 0명, 사외이사인 3명	12	41.4	11	40.8
③ 상근 0명, 사외이사인 4명	1	3.4	3	11.1
④ 상근 1명, 사외이사인 2명	6	20.7	8	29.6
⑤ 상근 1명, 사외이사인 3명	4	13.9	3	11.1
⑥ 상근 1명, 사외이사인 4명	3	10.4	1	3.7
⑦ 상근 1명, 사외이사인 5명	1	3.4	—	—
⑧ 상근 2명, 사외이사인 2명	—	—	1	3.7
무응답	1	3.4	—	—
합 계	29	100	27	100

5. 감사 및 감사위원 후보의 실제 추천자

감사 설치회사에 있어 감사후보의 실제추천자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표 8>과 같이 이사회 추천이 과반수를 이루고 있고, 감사를 받는 주 대상인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추천비율이 20.2%로 전년도 8.9%로부터 급증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유의 소유경영체제 하에서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추천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40.4%에 이르며 이는 전년도의 34.5%보다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임원(감사) 후보추천위원회의 비율은 3.2%로 아주 미미하다.

<표 8> 귀사 감사 후보의 실제 추천자는?

(단위 : 개사, %)

구 분	2007년	구성비	2006년	구성비
	회사수		회사수	
① 이사회	48	51.1	47	52.2
② 대주주 및 주요주주	19	20.2	23	25.6
③ 대표이사 및 경영진	19	20.2	8	8.9
④ 임원(감사)후보추천위원회	3	3.2	2	2.2
⑤ 기타	4	4.3	10	11.1
무응답	1	1.0	—	—
합 계	94	100	90	100

(2007년도 복수응답 2개사)

한편 감사위원 설치회사의 감사위원후보의 실제추천자에 대한 설문에서는 <표 9>와 같이 사외 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이 63.3%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감사를 받는 주 대상인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추천이 2006년에는 없었으나 2007년에는 10%(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추천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16.7%)나 새로 차지한 점은 우려할 문제로 보인다.

〈표 9〉 귀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후보의 실제 추천자는?

(단위 : 개사, %)

구 분	2007년	구성비	2006년	구성비
	회사수		회사수	
① 임원(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9	63.3	18	66.7
② 이사회	5	16.7	8	29.6
③ 대표이사 및 경영진	3	10.0	—	—
④ 대주주 및 주요주주	2	6.7	—	—
⑤ 기관투자자 및 채권기관	—	—	—	—
⑥ 기타	—	—	1	3.7
무응답	1	3.3	—	—
합 계	30	100	27	100

(2007년도 복수응답 1개사)

상기 두 표를 합하여³⁾ 감사설치회사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간 차이검증을 한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즉, 감사설치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추천이 과반수인데 비해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이 63.3%를 차지해 상이하게 나타났고, 이것은 통계적 차이검정 결과 p값이 0.000으로 5%유의수준에서 크게 다른 것으로 증명되었다.

〈표 10〉 조직별 감사(감사위원) 후보의 실제 추천자 비교

(단위 : 개사, %)

구 분	계	감사	구성비	감사위원회	구성비	차이검정 (X ²)
		설치회사		설치회사		
① 이사회	53(42.7)	48	51.1	5	16.7	p=.000
② 대주주 및 주요주주	21(16.9)	19	20.2	2	6.7	
③ 대표이사 및 경영진	22(17.7)	19	20.2	3	10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2(17.7)	3	3.2	19	63.3	
⑤ 기타	6(4.8)	5	5.3	1	3.3	
합 계	124(100)	94	100	30	100	

(복수응답 및 무응답=4)

3) <표 8>과 <표 9>의 응답문항의 내용이 같도록 뒤 표의 번호배열을 조정하여 앞 표와 일치시킨 후 차이검정을 실시하였음.

6. 감사(위원)의 독립성 유무

감사 및 감사위원이 대주주 및 주요주주, 경영진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에 대한 설문에서 <표 11>과 같이 ‘매우 독립’과 ‘독립적인 편’을 합할 경우 91.8%로서 비교적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간 비교를 보면 감사설치회사의 경우 ‘독립적인 편’이라는 응답이 1순위인데 비해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매우 독립적’이라는 응답이 1순위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조직 간 차이분석을 X^2 -test에 의해 실시한 결과 p값이 0.043으로서 유의수준 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표 11> 귀사의 감사(감사위원)는 실제로 대주주 및 주요주주, 경영진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까?

(단위 : 개사, %)

구 분	계	감사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차이검정 (X^2)
			구성비		구성비	
① 매우 독립적이다	36(29.8)	22	23.9	14	48.3	p=.043
② 독립적인 편이다	75(62.0)	62	67.4	13	44.8	
③ 독립적이지 않다	10(8.2)	8	8.7	2	6.9	
합 계	121(100)	92	100	29	100	

(결측치=1)

한편 독립적이지 않은 기업들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물은데 대하여는 <표 12>와 같이 ‘대주주 및 주요주주, 경영진이 선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추천하였기 때문에’가 76.9%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감사설치회사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간에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557).

〈표 12〉 만약 독립적이지 않다면(전 문항에서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단위 : 개사, %)

구 분	계	감사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차이검정 (χ^2)
			구성비		구성비	
① 대주주 및 주요주주, 경영진이 선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 거나 추천하였기 때문에	10(76.9)	7	70	3	100	p=.557
② 기업의 현실상 감사업무에만 전 념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이어서	2(15.4)	2	20	—	—	
③ 대주주 및 주요주주, 경영진의 인식 부족	1(7.7)	1	10	—	—	
합 계	13(100)	10	100	3	100	

7. 감사(위원)의 경력과 보수수준

감사의 과거 경력을 질문한데 대한 답변으로는 <표 13>과 같이 회사와 관계없는 타회사 임직원
의 비율이 35.1%로 가장 많았으나, 해당회사와 그 계열회사 및 관계회사 출신 임직원이 22.9%나 된
것은 독립성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와 교수 등 전문가의 비율이 19.6%로 전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13〉 귀사의 감사(감사위원)가 선임되기 이전의 경력 또는 직업은?(복수응답)

(단위 : 개사, %)

구 분	2007년		2006년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	구성비
① 당사와 관계없는 다른 회사 임직원	52	35.1	48	39.0
② 당사 출신 임직원	19	12.8	22	17.9
③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18	12.2	8	6.5
④ 당사 의 계열회사, 관계회사 출신 임직원	15	10.1	13	10.6
⑤ 기타	12	8.1	24	19.5
⑥ 교수	10	6.8	5	4.1
⑦ 채권기관 및 거래금융기관의 임직원	8	5.4	—	—
무응답	14	9.5	3	2.4
합 계	148	100	123	100

그리고 감사 및 감사위원의 보수수준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구체적 액수 질문에는 상근이나 비상근 모두 무응답이 반수에 가까워 답변에 유용성이 없었고, 상근감사 및 상근감사위원에 대하여 타 임직원과의 비교로 질문한 데 대하여는 <표 14>와 같이 전무와 상무급으로 49.2%(2006년에는 50.4%)가 답하였다. 충격적인 것은 14% 이외의 기업이 상근감사(위원)의 대우를 부장급 직원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표 14〉 상근감사(감사위원)의 보수(상여 등 포함)는 귀사 임직원의 보수수준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복수응답)

(단위 : 개사, %)

구 분	2007년	구성비	2006년	구성비
	회사수		회사수	
① 대표이사(사장) 수준	2	1.6	1	0.9
② 부사장 수준	7	5.7	9	7.7
③ 전무 수준	30	24.6	32	27.4
④ 상무 수준	30	24.6	27	23.0
⑤ 이사 수준	14	11.5	14	12.0
⑥ 부장 수준	17	13.9	17	14.5
⑦ 부장 이하	—	—	2	1.7
기타	2	1.6	—	—
무응답	20	16.4	15	12.8
합 계	122	100	117	100

8. 감사업무의 전담 여부

감사 및 감사위원이 감사업무 외에 타업무를 겸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표 15>와 같이 감사 업무만 전담이 83.9%로 답변하여 16% 정도가 타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감사설치회사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331$).

〈표 15〉 귀사의 감사(감사위원)가 감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까?

(단위 : 개사, %)

구 분	계	감사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차이검정 (X ²)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① 감사업무만 전담	99(83.9)	73	82	26	89.7	p=.331
② 다른 업무도 담당	19(16.1)	16	18	3	10.3	
합 계	118(100)	89	100	29	100	

(결측치=4)

그리고 겸직 업무는 <표 16>과 같이 윤리경영, 준법감시, 법무와 기획·예산, 경리·자금, 개발 및 신규사업 분야 등으로 다양한데 이들 대부분이 감사 본연의 업무와 겸직이 곤란한 사항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감사설치회사는 윤리경영과 준법감시 등을 겸직하는데 비해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사외이사들인 점을 고려하여 개발 및 신규사업 분야를 겸직시키는 등으로 상호간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12).

〈표 16〉 다른 업무도 담당할 경우(전 문항에서 ②로 응답한 경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단위 : 개사, %)

구 분	계	감사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차이검정 (X ²)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① 개발 및 신규사업분야	2(11.1)	1	6.3	1	50.0	p=.012
② 경리·자금	1(5.6)	—	—	1	50.0	
③ 기획·예산 등	3(16.7)	3	18.8	—	—	
④ 생산·관리	3(16.7)	3	18.8	—	—	
⑤ 윤리경영, CP(준법감시), 법무, 재단	9(50.0)	9	56.3	—	—	
합 계	18(100)	16	100	2	100	

(결측치=1)

9. 감사기능의 활성화

감사기능이 활발히 적극적으로 발휘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감사(감사위원) 스스로의 판단으로 조사(의뢰)나 감사(의뢰)를 한 사례(예 : 특별감사, 기획감사 등)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는 <표 17>과 같이 응답자 전체기준으로 43%가 없다고 답변하여 소극적으로 내부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감사설치회사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529).

〈표 17〉 계획된 감사일정 이외에, 감사(감사위원) 스스로의 판단으로 조사(의뢰)나 감사(의뢰)를 한 사례(예 : 특별감사, 기획감사 등)가 있습니까?

(단위 : 개사, %)

구 분	계	감사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차이검정 (χ^2)
		설치회사	구성비	설치회사	구성비	
① 있다	69(57.0)	51	55.4	18	62.1	p=.529
② 없다	52(43.0)	41	44.6	11	37.9	
합 계	121(100)	92	100	29	100	

(결측치=1)

또한 감사기능의 발전을 위해 전임 감사(감사위원)로부터 업무의 인수인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표 18>과 같이 3분의 1이상이 없었다고 답하여 업무의 연속성에 따른 내부감사의 효율성 확보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감사설치회사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305).

〈표 18〉 전임 감사(감사위원)로부터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있었습니까?

(단위 : 개사, %)

구 분	계	감사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차이검정 (χ^2)
		설치회사	구성비	설치회사	구성비	
① 있었다	78(64.5)	57	62.0	21	72.4	p=.305
② 없었다	43(35.5)	35	38.0	8	37.6	
합 계	121(100)	92	100	29	100	

(결측치=1)

10. 감사보조기구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감사제도 운영의 조직화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감사(감사위원)의 산하에 감사보조기구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놀랍게도 <표 19>와 같이 3분의 2만 있고 약 3분의 1은 없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조직간 비교한 결과 이러한 현상은 감사설치회사의 경우 58% 정도만 있는데 비해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93% 정도가 있어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차이분석을 χ^2 -test에 의해 실시한 결과 p값이 0.001로서 유의수준 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표 19〉 귀사는 감사보조기구(감사실 등)가 있습니까?

(단위 : 개사, %)

구 분	계	감사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차이검정 (X ²)
			구성비		구성비	
① 있다	81(66.9)	54	58.7	27	93.1	p=.001
② 없다	40(33.1)	38	41.3	2	6.9	
합 계	121(100)	92	100	29	100	

(결측치=1)

감사보조기구가 있는 경우의 소속 전담 임직원수는 <표 20>과 같이 5명이하가 48.8%로 영세한 편이었다(전연도도 비슷함).

〈표 20〉 감사보조기구 소속 전담 임직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단위 : 개사, %)

구 분	2007년		2006년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	구성비
① 1~2명	15	17.9	20	24.7
② 3~5명	26	30.9	26	32.1
③ 6~9명	11	13.1	11	13.6
④ 10~19명	10	11.9	13	16.1
⑤ 20명 이상	6	7.1	4	4.9
⑥ 무응답	16	19.1	7	8.6
합 계	84	100	81	100

(2007년 복수응답 3개사)

그리고 감사보조기구의 소속 임직원 중 최고책임자의 직급은 <표 21>과 같이 이사/상무 등의 임원이 25%로 전년의 12.3%보다 증가되어 감사의 외형상 위상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감사보조기구 소속 임직원의 최고책임자의 직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단위 : 개사, %)

구 분	2007년 회사수	구성비	2006년 회사수	구성비
① 전무 수준	3	3.6	2	2.5
② 상무 수준	10	11.9	4	4.9
③ 이사 수준	11	13.1	6	7.4
④ 부장·차장(팀장) 수준	52	61.9	64	79.1
⑤ 과장·대리	4	4.7	4	4.9
⑥ 기타	3	3.6	1	1.2
무응답	1	1.2	—	—
합 계	84	100	81	100

(2007년 복수응답 3개사)

그러나 감사(감사위원)가 감사보조기구 책임자의 임명동의권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표22>와 같이 68.2%만 행사하고 31.8%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감사설치회사의 경우 74.5%가 행사하고 있는데 비해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보다 낮은 55.6%만 행사하여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조직 간 차이분석을 X^2 -test에 의해 실시한 결과 p값이 0.023으로서 유의수준 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표 22〉 감사(감사위원)는 감사보조기구 책임자의 임명동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단위 : 개사, %)

구 분	계	감사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차이검정 (X^2)
			구성비		구성비	
① 규정상 있고 실제 행사하고 있다.	32(39.0)	19	34.5	13	48.2	p=.023
② 규정상 없지만 사실상 행사하고 있다.	24(29.2)	22	40.0	2	7.4	
③ 규정상 있지만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8(9.8)	4	7.3	4	14.8	
④ 규정상 없고 행사도 못하고 있다.	18(22.0)	10	18.2	8	29.6	
합 계	82(100)	55	100	27	100	

(복수응답 1개사)

한편 감사보조자에 대한 지휘통제권행사자는 <표23>과 같이 전체의 71.6%만 감사(감사위원회)라고 답하고 27.2%가 대표이사나 담당이사라고 답변하여 감사 및 감사위원의 인사상 지휘권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간 비교한 결과 감사설치회사의 경우 78.2%가 지휘통제권을 감사가 행사하고 있는데 비해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57.7%만 행사하여 사외이사 중심 조직에 기인한 차이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차이분석을 X^2 -test에 의해 실시한 결과 p값이 0.093으로서 유의수준 10%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표 23> 감사보조기구에 대한 지휘통제권한은 누가 행사하고 있습니까?

(단위 : 개사, %)

구 분	계	감사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차이검정 (X^2)
			구성비		구성비	
① 감사(감사위원회)	58(71.6)	43	78.2	15	57.7	p=.093
② 대표이사 또는 담당이사	22(27.2)	11	20	11	42.3	
③ 기타	1(1.2)	1	1.8	—	—	
합 계	81(100)	55	100	26	100	

감사보조기구가 외부감사인과 상호 정보 교환하는 빈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표 24>와 같이 분기 또는 반기 1회의 비율이 45.9%이었으나 모임이 전혀 없다는 비율이 30.6%나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감사설치회사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276).

<표 24> 외부감사인과 감사보조기구는 상호 정보교환을 위하여 어느 정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위 : 개사, %)

구 분	계	감사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차이검정 (X^2)
			구성비		구성비	
① 분기 1회 이상	35(41.2)	21	36.2	14	51.9	p=.276
② 반기 1회	4(4.7)	3	5.2	1	3.7	
③ 연간 1회	20(23.5)	17	29.3	3	11.1	
④ 모임을 갖고 있지 못한다.	26(30.6)	17	29.3	9	33.3	
합 계	85(100)	58	100	27	100	

(복수응답 4개사)

11. 감사항목/범위와 감사방법

감사의 중점분야에 대한 설문에서는 <표 25>와 같이 업무감사 중 적법성 감사(이사 업무의 적법성과 법규준수)가 26.7%(2006년은 27.6%로 거의 같음)로 적고 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리스크 관리, 경영계획의 실천여부, 경영판단의 타당성 등 타당성 감사와 회계감사가 71.6%(2006년은 72.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25> 귀사에서 현재 실시하는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 중 가장 중점적인 감사분야는?(복수응답)

(단위 : 개사, %)

구 분	2007년	구성비	2006년	구성비
	회사수		회사수	
① 경영계획·경영방침의 실천여부	35	12.0	20	13.2
② 경영판단의 타당성	29	9.9	15	9.9
③ 자회사 감사	18	6.2	12	7.9
④ 이사의 업무 집행의 적법성	31	10.6	21	13.8
⑤ 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80	27.4	40	26.3
⑥ 리스크관리	47	16.1	23	15.1
⑦ 법규준수	47	16.1	21	13.8
⑧ 기타	3	1.0	—	—
무응답	2	0.7	—	—
합 계	292	100	152	100

감사 방법으로 실지조사 수행여부를 질문한 것에 대하여는 <표 26>과 같이 대부분 한다고 답변하였으나 한 적이 없다고 한 비율이 16.7%로 나타난 것은 문제가 있다. 조직간 비교를 해보면 감사 설치회사의 경우 37.4%만 자주 하는데 비해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75.9%가 자주 하여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X^2 -test에 의해 실시한 결과 p값이 0.001로서 유의수준 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표 26〉 귀사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요원을 감사현장 또는 특정장소에 파견하여 실제로 감사를 행하는 실지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단위 : 개사, %)

구 분	계	감사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차이검정 (χ^2)
			구성비		구성비	
① 자주 한다.	56(46.7)	34	37.4	22	75.9	p=.001
② 필요시 가끔 한다.	44(36.7)	39	42.9	5	17.2	
③ 한 적이 별로 없다.	20(16.7)	18	19.8	2	6.9	
합 계	120(100)	91	100	29	100	

(결측치=2)

한편 실지조사의 방법이 <표 27>과 같이 면담/설명 청취, 대조·실사, 조회 및 현물 확인, 문서의 열람 등으로 광범하게 망라된 것을 고려할 때 다양한 감사방법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전연도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실지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복수응답 가능)

(단위 : 개사, %)

구 분	2007년 회사수		2006년 회사수	
		구성비		구성비
① 면담 또는 설명 청취	76	22.6	84	24.4
② 대조·실사	87	25.9	92	26.7
③ 조회 및 현물 확인	78	23.2	82	23.8
④ 문서의 열람	82	24.4	79	23.0
⑤ 기 타	3	0.9	3	0.9
무응답	10	3.0	4	1.2
합 계	336	100	344	100

그리고 실지조사 후의 결과처리에 있어 <표 28>과 같이 대표이사에 결과보고, 담당임원에 통지 등이 대종이지만, 이사회 보고의 비율이 17.7%로 전연도의 13.9%에 비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게 보인다.

〈표 28〉 실시조사 후의 결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복수응답 가능)

(단위 : 개사, %)

구 분	2007년 회사수	구성비	2006년 회사수	구성비
① 이사회 보고	41	17.7	30	13.9
② 감사강령을 실시함	34	14.7	37	17.1
③ 대표이사에게 감사결과 보고	75	32.3	74	34.3
④ 담당임원과 해당부서에 통지	67	28.9	62	28.7
⑤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	—	—	2	0.9
무응답	15	6.5	11	5.1
합 계	232	100	216	100

12. 감사관련 예산, 교육연수 및 규정 개폐에 대한 권한

감사를 둘러싼 회사 내의 환경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감사(감사위원)가 감사비용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추가경정에 있어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표 29>와 같이 과반수는 동의권이 있다고 했으나 44.6%가 동의권이 없다고 하여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것은 감사설치회사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686$).

〈표 29〉 귀사 감사(감사위원)는 감사관련 예산의 편성 및 추가경정에 있어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위 : 개사, %)

구 분	계	감사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차이검정 (χ^2)
			구성비		구성비	
① 있다	67(55.4)	50	54.3	17	58.6	$p=.686$
② 없다	54(44.6)	42	45.7	12	41.4	
합 계	121(100)	92	100	29	100	

(결측치=1)

그리고 감사(감사위원)가 외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표 30>과 같이 과반수가 연간 1~2회를 교육받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교육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는 답변도 26.4%나 되어 급변하는 시대에 전문지식의 확충 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이것은 감사설치회사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506$).

〈표 30〉 귀사 감사(감사위원)는 전문기관에서 감사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단위 : 개사, %)

구 분	계	감사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차이검정 (X^2)
			구성비		구성비	
① 연간 1~2회	64(52.9)	46	50.0	18	62.1	p=.506
② 연간 5회 이상	7(5.8)	6	6.5	1	3.4	
③ 연간 3~4회	18(14.9)	13	14.1	5	17.2	
④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	32(26.4)	27	29.3	5	17.2	
합 계	121(100)	92	100	29	100	

(결측치=1)

또한 감사(감사위원)가 감사관련 규정의 개폐시 사전 심의권이나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표 31>과 같이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권한이 전혀 없는 경우도 11.8%나 되어 감사(감사위원)의 위상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간 비교를 해보면 감사설치회사의 경우 70%가 사전 심의권을 갖는데 비해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44.8%만 사전 심의권을 가져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X^2 -test에 의해 실시한 결과 p값이 0.031로서 유의수준 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표 31〉 귀사 감사(감사위원)는 감사관련 규정의 개폐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위 : 개사, %)

구 분	계	감사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차이검정 (X^2)
			구성비		구성비	
① CEO의 최종 결재전 사전 심의권을 갖고 있다.	76(63.9)	63	70.0	13	44.8	p=.031
② CEO의 최종 결재후 사후 심의권을 갖고 있다.	13(10.9)	10	11.1	3	10.3	
③ 감사(감사위원회)가 최종 승인권을 갖는다.	16(13.4)	8	8.9	8	27.6	
④ 권한 자체가 없다.	14(11.8)	9	10.0	5	17.2	
합 계	119(100)	90	100	29	100	

(결측치=3)

13.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내부감사의 관계

최근 현안이 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감사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설문에 대하여 <표 32>와 같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66.1%에 달하였으며 ‘아직까지는 유용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28.1%였다. 그러나 조직간 비교를 해보면 양 조직 모두 1위가 ‘비교적 도움이 될 것이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2위는 감사설치회사의 경우 ‘아직까지는 유용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35.9%)인데 비하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는 답변(27.6%)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X^2 -test에 의해 실시한 차이분석 결과 p값이 0.006으로서 유의수준 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표 32> 현재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감사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단위 : 개사, %)

구 분	계	감사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차이검정 (X^2)
			구성비		구성비	
①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8(14.9)	10	10.9	8	27.6	p=.006
② 비교적 도움이 될 것이다.	62(51.2)	43	46.7	19	65.5	
③ 아직까지는 유용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34(28.1)	33	35.9	1	3.4	
④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줄 것 같지 않다.	6(5.0)	5	5.4	1	3.4	
⑤ 기타	1(0.8)	1	1.1	—	—	
합 계	121(100)	92	100	29	100	

(결측치=1)

그러나 감사(감사위원회)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와 관련하여 어려운 점에 대한 설문에서는 <표 33>과 같이 과반수가 운영실태 세부내용의 복잡성(복잡하고 난해한 표현 등)을 들고 있어 실제 적용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간 비교를 해보면 양 조직 모두 1위는 운영실태 세부내용의 복잡성(복잡하고 난해한 표현 등)으로 답변을 하였으나 2위는 감사설치회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와의 의사전달과정 미비’라는 답변(19.1%)인데 비하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임직원의 무관심(보고서의 지연제출, 내용 부실, 첨부서류의 불비 등)’이라는 답변(19.2%)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X^2 -test에 의해 실시한 차이분석 결과 p값이 0.091로서 유의수준 10%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표 33〉 감사(감사위원회)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와 관련하여 어려운 점은?

(단위 : 개사, %)

구 분	계	감사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차이검정 (X^2)
			구성비		구성비	
① 내부회계관리자와의 의사전달과 정 미비	19(16.5)	17	19.1	2	7.7	p=.091
② 운영실태 세부내용의 복잡성(복 잡하고 난해한 표현 등)	64(55.7)	50	56.2	14	53.8	
③ 이사회에 평가결과 및 미비점의 보고 이후 관련조치 미비	7(6.1)	7	7.9	—	—	
④ 임직원의 무관심(보고서의 지연제 출, 내용 부실, 첨부서류의 불비 등)	12(10.4)	7	7.9	5	19.2	
⑤ 기타	13(11.3)	8	9.0	5	19.2	
합 계	115(100)	89	100	26	100	

(결측치=7)

14. 감사와 소송

감사(감사위원)의 피소위험에 대한 준비태세를 알아보기 위해 주주대표소송 및 증권집단소송에 대응현황을 설문하였다. 먼저 주주대표소송에 대하여 평소 대비 상황을 질문한 결과 <표 34>와 같이 개괄적으로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전체의 39.0%가 특별한 대응체제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어 불안정한 상태로 보인다. 한편 조직간 비교를 해보면 감사설치회사의 경우 특별한 대응체제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비하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과반수가 ‘발생시에 대응할 조직 또는 체제가 명확하다’라는 답변(55.5%)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X^2 -test에 의해 실시한 차이분석 결과 p값이 0.000으로서 유의수준 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표 34〉 귀사에서는 주주대표소송에 대하여 평소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단위 : 개사, %)

구 분	계	감사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차이검정 (X ²)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① 명확하고 충분히 대응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6(5.1)	1	1.1	5	18.5	p=.000
② 발생시에 대응할 조직이 명확하다.	16(13.6)	6	6.6	10	37.0	
③ 사전에 예방 체제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다.	12(10.2)	9	9.9	3	11.1	
④ 발생시에 대응한 대처를 할 수 있다.	38(32.2)	32	35.2	6	22.2	
⑤ 특별한 체제는 취하고 있지 않다.	46(39.0)	43	47.3	3	11.1	
합 계	118(100)	91	100	27	100	

(결측치=4)

그리고 증권집단소송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을 질문한데 대하여는 <표 35>와 같이 다수인 43.7%가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답변하여 분석회계, 부실공시, 주가조작 등에 대응한 준비가 크게 미흡함을 드러냈다. 한편 조직간 비교를 해보면 감사설치회사의 경우 54.9%가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한데 비하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과반수가 ‘담당자(부서)차원 또는 임원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답변(82.1%)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X²-test에 의해 실시한 차이분석 결과 p값이 0.000으로서 유의수준 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표 35〉 귀사가 증권집단소송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은?

(단위 : 개사, %)

구 분	계	감사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차이검정 (X ²)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① 전사적으로 대응체제를 갖추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6(5.0)	3	3.3	3	10.7	p=.000
② 임원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14(11.8)	8	8.8	6	21.4	
③ 담당자(부서)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47(39.5)	30	33.0	17	60.7	
④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다.	52(43.7)	50	54.9	2	7.1	
합 계	119(100)	91	100	28	100	

(결측치=3)

그리고 위 소송에 대비하여 감사(감사위원)용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설문한데 대해 <표 36>과 같이 전체의 58.1%가 아직 미가입상태라고 답변하여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으며,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표 37>과 같이 1인당 평균보상한도가 10억 원 내외로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직간 비교를 해보면 감사설치회사의 경우 68.9%가 아직 미가입 상태인데 비하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77.8%가 가입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X^2 -test에 의해 실시한 차이분석 결과 p값이 0.000으로서 유의수준 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표 36> 감사(감사위원)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에 가입하였습니까?

(단위 : 개사, %)

구 분	계	감사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차이검정 (X^2)
		설치회사	구성비	설치회사	구성비	
① 가입하고 있다.	49(41.9)	28	31.1	21	77.8	p=.000
② 곧 가입할 예정이다.	9(7.7)	7	7.8	2	7.4	
③ 아직 가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59(50.4)	55	61.1	4	14.8	
합 계	117(100)	90	100	27	100	

(결측치=5)

<표 37> 감사(감사위원)가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에 가입하셨다면 1인당 평균 보험금(보상한도)은 얼마입니까?

(단위 : 개사, %)

구 분	2007년		2006년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	구성비
① 10억 미만	18	36.7	15	28.3
② 10억~50억 미만	10	20.4	10	18.9
③ 50억~100억 미만	2	4.1	20	37.7
④ 100억~200억 미만	5	10.2	8	15.1
⑤ 200억~300억 미만	2	4.1	4	7.5
⑥ 300억~400억 미만	1	2.0	2	3.8
⑦ 400억 이상	2	4.1	4	7.5
무응답	9	18.4	8	15.1
합 계	49	100	71	100

15.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협조체제 미흡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의 업무협조의 방법으로는 <표 38>과 같이 규칙적 회의가 아니고 “적절하게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전체의 64.2%로서 다소 추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직간 비교를 해보면 양 조직 모두 1위는 적절하게 의견교환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2위는 감사설치회사의 경우 ‘협조라고 할 정도로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26.4%)인데 비하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다’라는 답변(31%)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X^2 -test에 의해 실시한 차이분석 결과 p값이 0.000으로서 유의수준 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표 38> 외부감사인과의 업무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위 : 개사, %)

구 분	계	감사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차이검정 (X^2)
			구성비		구성비	
①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다.	11(9.2)	2	2.2	9	31.0	p=.000
② 적절하게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77(64.2)	62	68.1	15	51.7	
③ 협조라고 할 정도로는 하고 있지 않다.	28(23.3)	24	26.4	4	13.8	
④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다.	4(3.3)	3	3.3	1	3.4	
합 계	120(100)	91	100	29	100	

(결측치=2)

그리고 외부감사인과의 업무협조시 유의하고 있는 사항은 <표 39>와 같이 외부감사인의 판단내용의 확인(45.2%), 최근 회계관련 정보의 교환(2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감사설치회사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617).

〈표 39〉 외부감사인과의 업무협조시 유의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단위 : 개사, %)

구 분	계	감사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차이검정 (X ²)
		설치회사	구성비	설치회사	구성비	
① 외부감사인과의 판단내용의 확인	52(45.2)	41	46.1	11	42.3	p=.617
② 최근 회계관련 정보의 교환	32(27.8)	25	28.1	7	26.9	
③ 적절한 신뢰관계의 확립	27(23.5)	21	23.6	6	23.1	
④ 없다.	4(3.5)	2	2.2	2	7.7	
합 계	115(100)	89	100	26	100	

(결측치=7)

한편 외부감사인이 감사(감사보조기구 포함)에게 협조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서는 <표 40>과 같이 외부감사의 경과 및 그 결과에 대한 통지(30.8%)보다 적출된 문제점의 개선방안 제시와 의견교환(24.8%)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0〉 외부감사인이 감사(감사보조기구)에게 협조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입니까? (복수응답)

(단위 : 개사, %)

구 분	2007년 회사수		2006년 회사수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	구성비
① 외부감사 경과 및 그 결과에 대한 통지	78	24.8	72	26.6
② 적출된 문제점의 개선방안 제시 및 의견 교환	97	30.8	93	34.3
③ 업계의 현황 설명	8	2.5	5	1.8
④ 감사에 대한 지원·자문	41	13.0	31	11.4
⑤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검토결과 설명	45	14.3	26	9.6
⑥ 경영방침 및 신규사업 등에 대한 설명	4	1.3	4	1.5
⑦ 특정부문에 대한 중점적 감사요청	15	4.8	17	6.3
⑧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협조	24	7.6	22	8.1
⑨ 기 타	—	—	1	0.4
무응답	3	1.0	—	—
합 계	315	100	271	100

한편 감사(감사보조기구)가 외부감사인에게 협조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서는 <표 41>과 같이 내부감사 결과 제공 및 의견교환(21.4%)과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운영 현황설명(18.8%)이 우선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표 41〉 감사(감사보조기구)가 외부감사인에게 협조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입니까? (복수응답)

(단위 : 개사, %)

구 분	2007년	구성비	2006년	구성비
	회사수		회사수	
①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설명	35	11.4	34	12.3
② 업무관련 자료 등 정보제공	51	16.6	43	15.6
③ 업계의 현황 설명	14	4.5	13	4.7
④ 내부감사 결과 제공 및 의견교환	66	21.4	50	18.2
⑤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운영현황 설명	58	18.8	43	15.6
⑥ 자문 및 협의	40	13.0	36	13.0
⑦ 특정부문에 대한 중점적 감사요청	18	5.8	23	8.3
⑧ 외부감사인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협조	22	7.1	29	10.5
⑨ 기 타	—	—	1	0.4
무응답	4	1.3	4	1.4
합 계	308	100	276	100

IV. 개선방안

상술한 바와 같은 제반 현황 및 문제점을 전제할 때 아래에 각 항별로(일부 관련 항목은 묶임) 개선방안을 설문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1. 내부감사조직의 기구형태를 선택체제화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IBRD등 국제기구의 압력으로 강제 이식된 감사위원회 제도가 전통의 감사제도 보다 반드시 우월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것은 현행법 상 내부감사를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 중 선택할 수 있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의 감사에게 어느 제도가 감사기능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설

문에 대하여 감사제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답변(62%)이 감사위원회 제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답변(16.3%) 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표 3>참조),⁴⁾ 그 유지 이유도 현재의 감사제도만으로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62.0%로 전연도의 45.6% 보다 대폭 증가한데서도 알 수 있었다(<표 4>참조) .

또한 위 개선방안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 감사위원회가 기업투명성 제고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것에 대하여 도움되었다는 비율이 69%로 전연도의 77.8% 보다 상당히 감소한데서도 방증되고 있다(<표 5>참조).

요컨대 내부감사조직의 기구형태는 우열이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에게 한 가지 제도로 의무화하기보다는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 중에서 기업의 규모와 업종, 기업문화 등 환경에 따라 자유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감사 및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과 독립성 제고

감사(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양호하게 나타났지만 조직간 차이검증을 한 결과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 비하여 감사설치회사의 경우 독립성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p=.043$). 내부감사의 주된 역할이 주주 또는 이해관계자를 대신하여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것이므로 독립성이 생명인바 그 추천자는 피감사기관인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아니고 임원(감사)후보추천 위원회가 되도록 법에서 의무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행히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증권거래법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화 규정(제191조의16 제3항, 제54조의5 제2항 및 3항)을 준용하여 감사위원후보를 임원(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63.3%를 차지했으나 (<표 8>~<표 10>참조)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추천을 명문으로 배제하여 독립성 강화를 획기적으로 도모함이 필요하다.

3. 감사(위원)의 경력과 보수수준에 관한 규정 정비

상법에서는 감사가 당해 회사나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고 현직의 겸임금지 규정만 두고 있고, 감사위원의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현직의 이사 및 피용자와 최근 2년 이내 퇴직한 임직원, 그리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임직원의 경우 보임이 가능하되 감사위원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직의 경우 겸임 금지된 감사와 상치되고 있다.(상법 제411조, 제415조의2 제2항) 그리고 증권거래법에서는 상근감사와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에 대하여 당해 회사와 계열회사의 상근임직원과 최근 2년 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는 배제하고 있다(증법 제191조의12 제3항, 제191조의17 제2항, 제54조의6 제3항).

4) 연도별 추이에서도 전연도의 감사제도 선호 60% 감사위원회제도 선호 25.3%인 것과 비교할 때, 당연도에 감사위원회제도 선호도가 상당히 줄어든데서 잘 반증되고 있다.

경력 중 당해회사 및 계열회사, 관계회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감사(위원)로 보임되는 것은 감사의 업무성격과 한국의 감사(위원)기능 미흡 실정을 고려하여 퇴직기간에 관계없이 완전 배제하도록 하는 특단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표 13> 참조).

그리고 보수수준의 경우 상근감사(위원)의 보수를 임원 중 전무급 이상으로 명문화하여 부장수준 이하로 대우받는 일이 없도록 존엄성 확립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표 14>참조).

4. 감사업무의 전담 규정 명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집행업무를 감시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감사(위원)가 개발 및 신규사업 분야, 경리·자금, 기획·예산 등의 타 집행업무를 겸직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조직간 비교에서 감사설치회사는 윤리경영과 준법감시 등을 겸직하는데 비해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사외이사들인 점을 고려하여 개발 및 신규사업 분야를 겸직시키는 등으로 상호간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표 16>참조, $p=0.012$). 따라서 상장협의 상장회사 표준감사직무규정만으로는 강제되지 않고 있는 감사현실을 고려하여 감사 외의 업무는 겸직불가하다는 업무 전담규정을 현행 상법상 겸임금지규정(제411조)에 좀더 명확히 규정하고 이의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5. 감사기능의 활성화와 감사보조기구의 설치 의무화

감사기능이 활발히 적극적으로 발휘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감사(감사위원) 스스로의 판단으로 조사(의뢰)나 감사(의뢰)를 한 사례(예 : 특별감사, 기획감사 등)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는 응답자 전체기준으로 43%가 없다고 답변하여 소극적으로 내부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표 17>참조) 감사업무는 감사(위원) 스스로의 판단으로 기획감사나 특별감사를 직접 수행함이 원칙이고, 감사 교체시에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표 18>참조). 일부 학자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감사를 내부감사부서에 의뢰하여 간접감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나(임중호 2007) 이 주장은 감사와 내부감사를 다른 것처럼 억지로 구분하는 개념상 혼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⁵⁾ 회계학상 내부감사는 외부감사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회사 소속의 감사(감사위원) 지휘 하에 감사보조기구에서 이루어지는 감사행위를 총칭하는 것이며, 다만 집행기구 내의 내부통제부서(내부회계관리부와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포함)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이준섭 2006).

또한, 감사제도 운영의 조직화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감사(감사위원)의 산하에 감사보조기구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놀랍게도 3분의 2만 있고 약 3분의 1은 없다는 문제가 드러났는데(<표 19>참

5) 이러한 개념상 혼란은 상장협의 “상장회사 감사의 표준직무규정” 제3장(특히 제12조와 제16조)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동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감사부설기구와 내부감사부서는 감사부설기구로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 감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감사(감사위원회) 산하에 감사보조부서(명칭은 감사실이든 감사팀이든 무관)의 설치를 법령에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소속 전담 임직원의 수는 기업의 규모가 천차만별이므로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표 20>참조) 오늘날 일반화된 표본감사 수행을 전제할 때 전체 종업원수의 3% 내외면 좋을 듯하며, 그 최고 책임자는 부장 수준으로 하되 감사요원의 임명동의권과 지휘통제권을 감사(위원)가 행사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표 21>~<표 23>참조). 그리고 감사보조기구가 외부감사인과 상호 정보교환하는 빈도는 연간 1회 이상으로 감사(위원)의 외부감사인과의 협조 범위에 포함시켜 검토하면 될 것이다(<표 24>참조).

6. 감사항목/범위와 감사방법의 명시

감사항목 및 범위는 1984년 개정 상법 이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모두 미치며, 이 중 업무감사에 대하여는 타당성 감사가 아닌 적법성 감사설이 법학계의 통설이다(임중호 2007). 그러나 조사결과 감사항목이 내부통제 (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리스크 관리, 경영계획의 실천여부, 경영판단의 타당성 등에 걸치고 있어 회계감사와 함께 타당성 감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표 25>참조). 한편 권종호(2004)는 업무감사의 범위를 적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타당성 감사도 하여야 한다고 범위를 넓히고 있다.

감사방법에 관하여 상법 등 법령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고, 상장협의“상장회사 감사의 표준직무 규정”(2003)에서 감사를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로 3구분하고 있다(제10조). 그러나 전 임직원이 연간 수행한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만큼 부득이 감사실시방법을 표본감사 내지 시사(sample testing)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오류나 부정 적발시 그 범위를 넓혀간다는 사실을 명문화함이 필요하고, 감사요원을 감사현장 또는 특정장소에 파견하여 실제로 감사를 행하는 실지조사를 기본 수단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표 26>~<표 28>참조).

7. 감사관련 예산, 교육연수 및 규정 개폐에 대한 권한 부여

상법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415조의2 제5항). 그러나 감사의 경우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감사 관련 비용(소속 임직원 비용 포함)의 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편성 동의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감사의 독립성 유지에 도움될 것이다(<표 29> 참조).

또 감사(감사위원)가 외부 전문기관에서 교육/연수를 주기적으로 받게 하는 것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부응한 전문지식의 지속적 습득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표 30>참조).

그리고 감사관련 규정의 개폐시 사전 심의권이나 최종 승인권을 가지는 것은 감사의 위상제고 차원에서 예외 없이 필수적이라 하겠다(<표 31>참조).

8.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내부감사의 연계관련 이해도 제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일환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한 제반 회계시스템을 말하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이면 모두(단,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상장회사로서 직전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는 제외) 사장에 의해 지정된 내부회계관리 담당 상근이사가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의2). 감사는 그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담당 이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종합 검토한 뒤 매 1년마다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며 본점에 5년간 비치할 의무를 가진다.

한편 내부감사는 수행주체가 감사(위원)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지만 경영진이 수행하는 내부통제와 달리 그 준수여부와 효율성을 검토하는 별개의 개념이다.

설문조사에서 감사(감사위원회)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와 관련하여 어려운 점으로 과반수가 운영실태 세부내용의 복잡성(난해한 표현 등)을 들고 있어(<표 32>~<표 33>참조)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의 지속적 개선/보완과 적극적 활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9. 감사 관련 소송 대비태세 보강

임원의 하나인 감사(위원)가 유념해야 할 기업 소송으로는 상법상 주주의 대표소송(제415조 및 제415조의2에 의거한 제403조의 준용)과 증권관련집단소송(제3조)이다. 설문조사 결과 36.8~48.4%가 이들 소송에 특별한 대응체제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며,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자가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표 34>~<표 37>참조).

특히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을 앞두고 업무에 충실하며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에게 배상책임보험가입은 필수화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공인회계사법 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조항(제19조, 제28조)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조항(제17조의2)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협조체제 강화

전술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상장회사를 포함하되 정부투자기관과 일부 주식회사는 제외함)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를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대하여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제2조, 제4조) 또한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위원)와 외부감사인인 상호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이러한 협조체제와 관련하여 23.3%가 협조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표 38>참조), 외부감사인인 감사(위원)에게 협조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에서는 단순한 외부감사의 경과 및 그 결과에 대한 통지에 앞서 적출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제시와 의견교환을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는바(<표 39> ~ <표 41>참조) 최근의 현안사항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포함한 내부통제제도의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에 대한 지도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협력 자세가 바람직하다 하겠다.

V. 결 론

이 연구는 법과 제도를 고려한 경영학적 접근(소위 법경영학적 연구)으로서 기업지배구조의 하나인 내부감사제도 즉, 감사와 감사위원회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실태를 설문조사 분석함으로써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강제 이식된 이래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영미식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현상을 진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감사설치회사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간의 차이검증에 의해 과학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실천적 연구를 시도한 특징을 지녔다.

본 조사분석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회원인 주권상장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2007년 4월~6월 중에 감사(감사위원), 감사실 책임자 및 실무자에게 설문조사한 2007년도 감사(감사위원회) 및 감사실 운영현황 통계자료에 근거하되, 조직 형태별 비교분석을 추가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표본기업은 2007년의 경우 총 122개사로 2007년 6월말 현재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전체 주권상장기업 676개사의 18.1%에 해당하였다.

연구결과를 설문조사분석에서 도출된 개선방안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감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게 감사와 감사위원회제도 중 어느 제도가 감사기능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데 대하여 감사제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답변(62%)이 감사위원회제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답변(16.3%)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제도 채택기업 중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서 임의로 선택한 기업의 비율이 최근 수년간 42%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는 점에서 보듯이 감사위원회제도가 감사제도보다 꼭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부감사조직의 기구형태는 규모에 따라 강요할 것이 아니고 기업이 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 선택권을 갖게 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감사 후보의 추천은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아닌 별도의 감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한다.

셋째, 감사(감사위원)의 경력과 보수수준에 관한 규정을 독립성 제고와 기업내 위상 확립차원에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감사업무는 기획, 경리 등의 다른 업무와 배타적으로 전담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감사기능의 활성화는 감사실 등 감사보조기구의 설치 의무화와 감사요원에 대한 인사동의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감사대상 항목의 범위를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로 명기하며 감사방법은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감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감사관련 예산, 교육연수 및 규정 개폐에 대한 권한이 감사(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감사위원)에게 공식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여덟째,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내부감사의 연계관련 이해도가 감사의 연례평가업무 실질화를 통해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

아홉째, 주주대표소송 외에 최근 본격 시행에 들어간 증권집단소송 등 감사 관련 소송대비 태세가 상당액의 임원배상책임보험가입 등으로 실효성 있게 보장되어야 한다.

끝으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인의 협조체제가 발견된 부정이나 위법사항의 보고를 위해 정례화될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시 협조 등 그 내용의 구체화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기업지배구조의 중요 부분인 내부감사에 관한 실태조사결과를 연간 변화 추이뿐만 아니라 조직형태별(감사와 감사위원회) 관점차이를 추가하여 통계학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연구의 한계로는 설문항목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므로 비교법적 또는 이론적으로 주장될 수 있는 개선방안과 일관성이 다소 결여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향후 설문항목의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갑. 2002. 「주식회사의 경영감독·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구보고서 2002-5
- 권종호. 2004. 「감사와 감사위원회제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회사실무총서 II-2.
- 김광윤·김상준. 2005. “기업지배구조와 법인세유연화”, 세무학연구 제22권 4호 : 63-86.
- 김상규·윤선희. 2000.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구보고서 2000-3
- 남상구. 2006. “글로벌경쟁과 기업지배구조”.상장협연구 제53호. 2006 춘계호 : 3-16.
- 박경서·이은정. 2004. “기업지배구조와 주가수익률 및 시장의 효율성”. 기업지배구조 리뷰.
- 이근수. 1992. “미국의 감사위원회제도와 그 도입가능성”. 상장협 제26호(추계호).
- 이준섭. 2006. 「상법상 감사 및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기능의 효율적 정립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구보고서 2006-3.
- 이철송. 2005. 「회사법강의」 제12판. 박영사.
- 임중호. 2007.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기능제고 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감사인대회 자료07-5. 101-135.
- 정광선. 2002.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중시경영의 실천방안”.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사외이사의 역할(상장협 자료 2002-7) : 1-16.
- 정준우·김영호·권종호·전삼현·한기정·정용상·정완용·원용수. 2007.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감사제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실무전집 32호.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3. 「상장회사 감사의 표준직무규정」.
- _____. 2007. “12월 결산 상장회사 감사 및 감사위원 현황”.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제88호 : 8-9.
- _____. 2007. “2007년도 감사(감사위원회) 및 감사실 운영현황 통계자료”.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제92호 : 10-20.
- Krishnan, J. 2005. Audit Committee Quality and Internal Control : An Empirical Analysis. *The Accounting Review* : 645-675.

A Survey Analysis of Internal Auditing System as a Corporate Governance – Auditor vs. Audit Committee –

Kwang-yoon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iagnose the status quo of Audit Committee system forcibly transplanted in the wake of IMF economic crisis, which is not yet rooted and to explore its problems and present the recommendations focused on internal auditing system as a critical part of corporate governance. The research methodology applied is the legal-management view using the survey research.

The survey analysis is based upon the statistical data concerning 2007 Operation of Auditor or Audit Committee and Audit Team which were collected via the questionnaire to auditors, members of audit committee and audit staffs from April to June in 2007. The sample comprises 122 listed companies and is equivalent to 18.1% of the population totaling 676 listed companies that filed the annual reports as of June 30, 2007.

As a result of the survey research, the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

First, organizational form of internal auditing system should be chooseable among Auditor or Audit Committee regardless of the company size, based upon the stagnant trend of audit committee in the voluntary adoption by the companies of less than 2 trillion won in terms of asset size.

Second, nomination of auditors or members of audit committee should be made by way of auditor candidate nomination committee for the upgrade of independence. Third, the regulation of career and reward of auditors or members of audit committee should be revised more independently and reputedly. Fourth, audit service should be executed independently of other services such as planning and accounting. Fifth, audit function should be activated through the compulsory auxiliary department as well as consenting right of auditing staffs.

Sixth, audit scope and examining method such as sample testing should be described ex ante. Seventh, auditors or members of audit committee should be given the rights on budgeting, training and regulation relating to auditing formally. Eighth, understanding of association betwee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and internal auditing should be developed by the evaluation function. Ninth, auditors or members of audit committee should take effective measures against litigations regarding audit via higher casualty and indemnity insurance.

Finally, cooperation between internal auditors and external auditors should be more reinforced through review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Key words> corporate governance, internal auditing, auditor, audit committee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Ajou University, kimkyn@ajou.ac.kr, 011-9279-4883